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431

발의연월일: 2021. 9. 3.

발 의 자:양금희·김도읍·김예지

서병수・성일종・송언석

윤두현 · 이만희 · 이명수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 또는 매출 평균금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공제를 적 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급변하는 글로벌산업환경에 적응하고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대상 확대 및 과중한 세부담의 완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완화,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 및 업종유지요건의 완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적용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6항 및 제63조제3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10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중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35"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 및"을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경기업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승)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2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	
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	
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	
이 <u>10년</u> 이상 계속하여 경영	<u>5년</u>
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 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 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u>10년</u> 이상 2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 다. (생략)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가 <u>5년</u>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6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 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 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 마. (생략) 2. (생략)

⑦ ~ ⑪ (생 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제

- ② (생략)
-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

1
가 <u>100</u>
분의 35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
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 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 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 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 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견기업 및
,
④ (현행과 같음)